

교수업적평가 규정

제정 : 2001. 09. 01.

개정 : 2015. 03. 06.

개정 : 2018. 08. 07.

개정 : 2018. 08. 07.

개정 : 2020. 06. 05.

담당 : 교학팀 (02-950-5406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적용범위)	제3조(위원회)	제4조(구성 및 임기)
제5조(결의사항)	제6조(회의)	제7조(업무관리)	제8조(업적평가)
제8조의2(영역별 기준 점수 및 평가기준)	제9조(업적기간)	제10조(업적자료 제출)	제11조(평가 및 보고)
제12조(이의신청 및 재평가)	제13조(평가활용)	제14조(업적우수교수 선정)	제15조(비밀유지)
제16조(세부지침)			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의 설립목적인 복음의 일꾼 양성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신앙, 교육, 연구 및 봉사활동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(개정03.01.01.)(개정09.02.13.)(개정15.03.06.)

제2조의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, 객원교수, 대우교수 등 비전임 교원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다. 여기에서 전임교원이라 함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를 말한다.(개정12.08.10.)

제2장 평가 기구

제3조(위원회)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7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수 중 총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(개정03.1.1)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교학팀장으로 한다(개정15.03.06).

제5조(결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.(개정03.01.01)

1. 영역별 교원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
2. 영역별 평가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보완
3. 영역별 배점 및 평가기준 조성
4. (삭제03.01.01.)
5. (삭제03.01.01.)
6. (삭제03.01.01.)
7. 기타 교원업적 평가에 관계되는 사항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.

제7조(업무관리) 교학처 교학팀에서 담당한다.(개정03.01.01.)(개정15.03.06.)

제3장 교원업적 평가 및 평가 절차

제8조(업적평가) ① 교원의 업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4개 영역(신양, 교육, 연구, 봉사영역)으로 나누어 시행한다.(개정09.02.13.)

② 평가영역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정의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(신설09.02.13.)

③ 최종 산출된 평가 결과는 3개(A,B,C) 등급으로 분류하고 n/3 비율을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. 단, 동점자일 경우 상위등급으로 부여하고 비율 적용 시 소수점일 경우 올림으로 적용하여 해당 인원을 산출한다.(신설20.06.05.)

제8조의2(영역별 기준 점수 및 평가기준)(삭제15.03.06.)

제9조(업적기간) ① 업적은 전년 9월 1일부터 당해연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 내에 이루어진 업적으로 평가한다.(개정15.03.06.)

② 임용 및 복직기간이 1년 미만인 교원은 교원업적평가에서 제외한다.(개정05.11.17.)

③ (삭제15.03.06.)

제10조(업적자료 제출) ①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(필요시 비전임 교원 포함)은 자신의 업적평가 자료를 매년 9월 15일 이내에 학사인트라넷을 통해 입력하고 증빙자료는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15.03.06.)(개정18.08.07.)

② (삭제03.01.01.)

③ 총장은 계약제 임용 및 승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④ 자료제출 서식 및 지침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- ⑤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평가에서 제외되면 당해연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.
- ⑥ 교학처는 업적자료 제출 마감 후 3주 이내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 심의 받은 업적자료는 4주 이내 해당 교원과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인한다.(개정15.03.06)(개정18.08.07.)

제11조(평가 및 보고) ① 위원회는 평가자료에 의하여 9월 중에 평가를 실시한다. 단, 재임용 및 승진과 연구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.

② 교학처는 최종 확인된 업적 자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, 결재를 득한 후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.(개정15.03.06)(개정18.08.07.)

제12조(이의신청 및 재평가)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총장은 재평가를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재심위원회는 총장이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재심위원회는 재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장 평가결과 활용 및 부칙

제13조(평가활용)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.

1.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
2. 교원의 보수
3. 교원 연구년, 해외 연수, 전임교원 선정, 연구비 지급 및 기타

제14조(업적우수교수 선정) 위원회는 업적평가결과 최우수 교원을 선정하여 총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.

1. 4개 영역 전체 최우수 교원
2. 강의평가 최우수 교원

제15조(비밀유지) ①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외비로 취급하며 본인관련 평가서 등은 본인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.

②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교원업적평가에 관련한 교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였을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.

제16조(세부지침)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에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2015년 업적평가는 2015.01.01. ~ 2015.12.31.로 하며 2016년 업적평가는 2015.09.01. ~ 2016.08.31.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